

##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10일
신청법인	명칭	전화번호		
	소재지			
대표자 (이사·청산인)	성명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		
	주소	전화번호		
처분재산	종류 및 수량			
	금액			
	처분방법			

처분사유

「민법」 제80조제2항 및 「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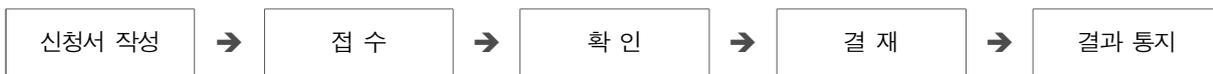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보건복지부장관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해산 당시의 정관 1부(해산신고 시 제출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2. 총회의 회의록 1부(사단법인으로서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	---	-----------

### 처리절차



신청인

보건복지부(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)